

헴프산업 육성 및 헴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27
----------	-------

발의연월일 : 2026. 2. 25.

발 의 자 : 윤준병 · 박희승 · 안호영
임미애 · 이원택 · 이성운
김 윤 · 이춘석 · 이해식
서삼석 · 임오경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산업용, 의료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등으로 정의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농도(이하 “유해성분 농도”라 한다)가 지극히 낮아 환각성·중독성이 없는 대마초 품종까지도 동일하게 마약류로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 유럽연합 등 다수의 해외 국가에서는 칸나비스속 식물 중 유해성분 농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대마초 품종을 헴프로 정의하여 기존의 마약류 대마와 구분하고, 이를 섬유, 식품, 의약·의료, 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재배·가공·유통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반면, 우리

나라의 경우 대마는 섬유 및 종자 채취를 위한 제한적 재배, 대마초 종자 및 종자유 등 일부 식품, 공무·학술연구·의료 목적으로 승인받은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헴프의 산업적·경제적 활용 가능성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유해성분 농도가 낮은 대마를 ‘헴프’로 명확히 정의하고, 헴프의 재배·가공·유통·판매 등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의료·식품, 산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합리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근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헴프 관련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안전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헴프의 재배·육종과 헴프제품의 제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헴프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안전관리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헴프, 헴프제품, 헴프산업, 헴프취급자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헴프산업의 육성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헴프산업의 육성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헴프산업의 육성등에 관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헴프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헴프안전관리센터 및 지역사무소를 둘 수 있음(안 제8조).

마. 헴프를 재배하려는 자 또는 헴프를 육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
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9조 및 제13조).

바. 헴프제품 제조업·판매업·수출입업·운송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19조).

사. 헴프의 재배 또는 육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
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마재배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안 제23조).

아. 헴프재배업자와 그 종사자 및 헴프육종업자와 그 종사자는 헴프의
재배·육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헴프, 원료물질 및 헴프 공정
부산물의 무단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을 준수하여야 함(안 제24조).

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헴프의 오용이나 남용을 방지하고 헴프의
안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헴프의 재배지역 또는 헴프제품의 제조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음(안 제25조).

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헴프산업의 집적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헴프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26조).

카. 헴프취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헴프, 원료물질 및 헴프 공정
부산물 취급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안 제27조).

타. 헴프 재배업자, 헴프 육종업자, 헴프제품제조업자등이 헴프 공정부 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28조).

파. 헴프취급자는 고시기준에 따른 헴프추적관리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기록장치에 기록·보관하여야 함(안 제29조).

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헴프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헴프추적관리시스템과 헴프추적관리정보 기록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함(안 제30조).

헴프산업 육성 및 헴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헴프의 재배·육종과 헴프제품의 제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헴프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헴프의 안전관리를 도모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헴프”란 칸나비스(Cannabis)속 식물로서 델타-9-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delta-9-tetrahydrocannabinol)의 농도(이하 “유해성분 농도”라 한다)가 건조 중량 기준 1천분의 3 이하인 것 또는 그 일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헴프제품”이란 헴프를 이용하여 만든 최종 제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품의 유형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헴프산업”이란 헴프의 재배, 육종, 헴프제품의 제조·판매·수출입·운송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원료물질”이란 헴프에서 유래한 물질 중 헴프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헴프 공정부산물”이란 원료물질과 헴프 가공 공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줄기, 뿌리, 잎 등의 부위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6. “헴프취급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가. 헴프재배업자: 헴프의 재배를 업(業)으로 하는 자

나. 헴프육종업자: 헴프 품종의 개발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다. 헴프제품제조업자: 헴프제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라. 헴프제품판매업자: 헴프제품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마. 헴프제품수출입업자: 헴프제품의 수출과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바. 헴프제품운송업자: 헴프제품의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

사. 헴프연구자: 「학술진흥법」 제2조제5호의 연구자에 해당되며 헴프의 재배·육종, 헴프제품의 제조·판매·수출입·운송과 관련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헴프산업의 육성 및 헴프의 안전관리(이하 “헴프산업의 육성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방안을 마

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종합적인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헴프산업의 육성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헴프산업의 육성등을 위하여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헴프산업의 육성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헴프산업의 육성등을 위한 기반조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헴프산업의 육성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헴프산업의 육성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헴프산업의 육성등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헴프산업의 육성등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헴프산업의 육성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4. 품질검사 등 헴프 검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헴프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헴프산업 육성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헴프 생산자단체 또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헴프의 우량 종묘 개발·보급, 경작 및 검사기술의 개발·보급, 재배에 적합한 토지의 조사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변경, 사업비의 보조·융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헴프산업 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헴프산업의 육성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헴프의 재배·육종과 헴프제품의 제조·판매·수출입·운송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제8조에 따른 헴프산업진흥원,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헴프산업진흥원) ① 헴프산업의 육성등에 관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헴프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헴프산업의 육성등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개발
2. 헴프산업의 육성등에 관한 연구, 정보 수집 및 제공
3. 헴프 및 헴프제품의 유해성분 농도 등의 시험·검사
4. 헴프산업의 육성을 위한 유통·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 및 수출 지원
5. 헴프산업의 육성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헴프산업의 육성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전시·홍보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업 성과의 보급
 8. 그 밖에 헴프산업 육성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⑤ 진흥원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헴프안전관리센터 및 지역사무소를 둘 수 있다.
-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헴프의 재배허가 등

제9조(헴프의 재배허가) ① 헴프를 재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육종 목적을 제외한 헴프 재배: 재배목적, 재배면적, 재배지 위치, 재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육종 목적의 헴프 재배: 재배면적, 재배지 위치, 재배시설, 헴프 품종권 등록증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헴프의 재배허가를 받은 자를 제30조에 따른 헴프추적관리시스템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헴프의 재배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배허가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에 따른 헴프재배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마약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마약류 중독자

3. 「약사법」·「의료법」·「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밖에 마약류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2조에 따라 헴프 재배허가 취소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헴프 재배허가를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제1항은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용된다.

제11조(재배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헴프 재배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헴프를 재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재배허가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헴프 재배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헴프 재배허가를 받은 경우
2. 헴프재배업자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3. 헴프재배업자가 이 법에 따라 자신에게 발급된 다른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계속하여 헴프를 재배하지 아니한 경우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헴프의 재배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3조(헴프의 육종허가) ① 헴프를 육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헴프의 육종허가를 받은 자를 제30조에 따른 헴프추적관리시스템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육종허가의 결격사유 등의 준용) 육종허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 육종허가의 유효기간 및 갱신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 육종허가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배”는 “육종”으로, “재배허가”는 “육종허가”로, “헴프재배업자”는 “헴프육종업자”로 본다.

제15조(승인품종의 재배) ① 헴프재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품종만 재배하여야 한다.

② 헴프 재배를 위한 승인품종의 선정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유해성분 농도 검사 및 보고) ① 헴프재배업자(헴프의 꽃과 잎을 채취할 목적으로 재배한 자로 한정한다)는 진흥원으로부터 유해성분 농도를 시험한 결과보고서를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헴프의 유해성분 농도 시험·검사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헴프의 폐기 등) ① 헴프재배업자(헴프의 꽃과 잎을 채취할 목적으로 재배한 자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헴프를 폐기하고 그 결과를 폐기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험 결과보고서의 유해성분 농도가 1천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결과보고서 수령 후 48시간 이내에 폐기를 시작하고 7일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완료할 것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험 결과보고서의 유해성분 농도가 1천분의 3을 초과하고 1천분의 10 이하인 경우: 해당 결과보고서 수령 후 지체 없이 폐기를 실시하고 45일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완료할 것

② 그 밖에 헴프의 폐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헴프의 수확 및 양도 등) ① 헴프재배업자(섬유 생산 또는 종자 채취 목적으로 재배한 자로 한정한다)는 헴프를 수확하였을 경우 꽃과 잎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헴프의 일부를 폐기하여야 한다.

② 헴프재배업자(헴프의 꽃과 잎을 채취할 목적으로 재배한 자로 한정한다)는 헴프를 수확하였을 경우 꽃과 잎을 헴프제품제조업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헴프의 수확, 폐기 및 양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헴프제품제조업등의 허가) ① 헴프제품 제조업·판매업·수출

입업·운송업(이하 “헴프제품제조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헴프제품제조업: 자본금, 가공시설, 원료공급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헴프제품판매업: 판매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헴프제품수출입업: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헴프제품운송업: 운송차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헴프제품제조업등의 허가를 받은 자를 제30조에 따른 헴프추적관리시스템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헴프제품제조업등에 대한 허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헴프제품제조업등 허가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헴프제품제조업등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마약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마약류 중독자

3. 「약사법」·「의료법」·「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밖에 마약류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22조에 따라 햄프제품제조업등의 허가 취소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햄프제품제조업등의 허가를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제1항 각 호는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용된다.

제21조(햄프제품제조업등 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햄프제품제조업등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햄프제조등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햄프제품제조업등 허가의 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햄프제품제조업등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라 햄프제품제조업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헴프제품제조업자·판매업자·수출입업자·운송업자(이하 “헴프제품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3. 헴프제품제조업자등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헴프제품제조업자등에게 발급된 다른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계속하여 헴프 제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식품의약품처장이 헴프제품제조업등의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3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9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헴프의 재배 또는 육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마재배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9조에 따라 헴프제품제조업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른 허가·승인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장 헴프 안전관리 등

제24조(헴프취급자의 안전관리) ① 헴프재배업자 및 그 종사자는 헴프의 재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헴프, 원료물질 및 헴프 공정부산

물의 무단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헴프육종업자 및 그 종사자는 헴프의 육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헴프, 원료물질 및 헴프 공정부산물의 무단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헴프제품제조업자등 및 그 종사자는 헴프제품등의 제조·판매·수출입·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헴프 및 헴프 공정부산물의 무단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헴프 취급활동지역의 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헴프의 오용이나 남용을 방지하고 헴프의 안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헴프의 재배지역 또는 헴프제품의 제조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헴프산업 클러스터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헴프산업의 집적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헴프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헴프산업 클러스터는 헴프, 헴프제품,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등의 반입·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계획이 수립된 지역이어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제시설은 헴프, 헴프제품,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등의 무단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울타리 및 감시카메라를 헴프산업 클러스터 지정 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헴프산업 클러스터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헴프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헴프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목적
2. 헴프산업 클러스터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에 관한 사항
3. 헴프산업 클러스터의 구체적 조성 방안 및 자원 확보방안
4. 그 밖에 헴프산업 클러스터의 지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헴프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헴프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의 타당성 및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헴프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위치·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헴프산업 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헴프산업 클러스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조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3.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⑨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8항에 따른 지정해제의 절차·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헴프 취급의 보고) ① 헴프취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헴프, 원료물질 및 헴프 공정부산물 취급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한 헴프취급자는 헴프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고시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고한 헴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헴프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헴프취급자에 대하여 고시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3년마다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한 헴프취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헴프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한 헴프취급자가 고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보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헴프취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헴프취급자의 보고의무에 관한 절차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헴프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① 헴프재배업자, 헴프육종업자 또는 헴프제품제조업자등이 헴프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그 밖에 헴프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및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헴프추적관리정보의 기록·보관 등) ① 제27조에 따라 보고한 헴프취급자는 고시기준에 따른 헴프추적관리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기록장치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헴프취급자는 제1항에 따른 헴프추적관리정보의 기록을 기록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 헴프취급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보관된 정보가 제30조에 따른 헴프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헴프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헴프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헴프추적관리시스템과 제29조에 따른 헴프추적관리정보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헴프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이 법에 따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3. 이 법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 받으려는 자

제32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헴프 재배의 허가취소
2. 제1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에 따른 헴프 육종의 허가취소
3. 제22조에 따른 헴프제품제조업등의 허가취소

제33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헴프의 재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헴프를 재배한 자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헴프를 재배한 자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헴프의 육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헴프를 육종한 자
4. 제1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헴프를 육종한 자
5.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품종이 아닌 헴프를 재배한 헴프재배업자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헴프제품의 제조업등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헴프제품을 제조·판매·수출입·운송한 자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발급한 자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헴프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꽃과 잎 등 헴프의 일부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헴프의 꽃과 잎을 헴프제품제조업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한 자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분 농도시험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헴프재배업자 또는 그 종사자
3.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헴프육종업자 또는 그 종사자
4.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헴프제품제조업자등 또는 그 종사자
5.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헴프취급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헴프취급자

6.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헴프추적관리에 필요한 고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헴프취급자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헴프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